

연세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일: 2014.10.14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과제지원팀(02-2123-518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하는 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연구개발예산”이란 정부에서 새로운 지식축적이나 창조적인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2. “장비”란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말하며,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균실, 저온실, 동물사육실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연구시설”이란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말한다.
4.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5. “연구기관지원사업”이란 국공립 연구기관, 부처 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과 부·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장비)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제외)가 수행기관이면서,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및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NTIS)에 보유장비로 등록된 장비에 적용한다. 단,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2.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상정
3. 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4. 단독활용장비의 판정 및 해제
5.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
6.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유휴·불용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
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구성)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공동기기원장, 산학협력단 과제관리센터장
2. 임명직 위원 : 이학계열, 공학계열, 생명과학계열 소속 교원 각 1인 이상 2인 이내, 관련 전문가 2인 이상 4인 이내
- ② 위원장은 공동기기원장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당연직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과제관리센터장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장비심의)

- ① 연구기관지원사업에서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1호 : 장비 도입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장비책임자가 장비활용범위를 판정받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2호 : 장비 활용목적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장비책임자가 장비상태를 판정받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3호 : 장비상태 판정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 ① 연구산학총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연구산학총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개정)

이 규정은 장비심의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발의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1호>

장비 도입 요구서

1. 과제현황

연구책임자소속	대학	학과	연구책임자 성명	
연구비지원기관			RMS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장비담당자/연락처	

2. 장비정보

장비 한글명		분류 (해당란에 'O' 표시)	주장비() / 부대장비()		
장비 영문명		단가		수량	
모델명		금액			
설치장소		도입시기			
원산지		제조회사			

3. 세부정보

구분	항 목	내 용
기본정보	장비용도	구체적인 용도 서술
	장비사양	요구 성능 및 상세사양 기술("연구 장비 규격서" 별첨)
	취득방법	자체개발, 국내외 구매구분 및 취득방법 기술
	국내외 기기 보유 현황	국내외 기기 보유현황 기술
	장비특성	장비의 특성 기술
운영정보	운영기반 조성 여부	장비운영기반(설치장소, 환경 등)을 기술
	운영비 확보 방안	장비 운영비 확보방안에 대한 기술
	운영시 전문성	운영부서의 장비분야 전문성에 대한 기술
	운영부서 실적	운영부서의 장비 운영실적 및 능력 기술
	운영전문가 확보 여부	운영 전문가의 확보여부 및 전문가에 대한 기술
타당성	사업 분야 타당성	사업(연구)분야에 대한 구매장비의 타당성 기술
	수요 및 파급효과	구축장비의 수요 및 구축시 예상파급효과 기술
	유사동종장비 차별성	유사 동종 장비와의 차별성 기술
노후 대체 장비의 경우	시기적 적절성	대체시기의 적절성 기술
	기존장비의 활용실적	대체예정 장비의 활용실적 기술

붙임 : 1.<별지서식 1-1> 장비 규격서 / 2.<별지서식 1-2> 장비 활용계획서

위 장비 도입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도입요구자 : _____ (인)

장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장비 규격서

주요구성 부분 및 SPECIFICATION

1. 특징

2. 세부규격(성능 및 사양)

3. 표준 및 부속품

4. 선택부속 또는 추천부속품

5. 용도 및 A/S기간 등

※ 작성 요령

- 장비명 및 수량 : 구매 요청한 물품의 이름, 수량, 취득금액을 기재하되 하나의 시스템 안에 제작사나 제조업체가 다른 독립된 기능을 갖는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품명을 구분하여 작성
- 장비 구매비용의 산정원칙 : 부가가치세(VAT)는 물론 관세, 하역비, 보관비, 수송비 등 인수할 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총 구매 금액을 산정하고, 모듈화된 장비의 경우 실제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로 산정하여야 함.
예) 주장비(70,000만원) + 보조 장치(1,000만원) + 부대장비(2,000만원) ⇒ 구매가격을 10,000만원으로 산정함
※ 주장비(Main Part), 보조 장치(Accessory), 부대장비(Option 또는 Attachment) 등

장비 활용 계획서

활용 계획 상세 기술

1. 연구 장비의 필요성(중요성)

※ 신청하는 장비와 관련된 수행과제와의 관련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 장비의 기본 활용 계획 (향후 2년 정도)

※ 장비의 활용분야 및 예상활용건수/월, 기보유 장비와의 연계활용 등을 기술

3.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계획

※ 기관 내·외부 공동 활용여부 기술 및 계획 기록

4. 연구 장비 전문 인력 확보 여부 (방안)

※ 기획보시 전담인력의 전공 등 제시 (담당자명/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영장비명)

5. 연구실 연구 장비 보유 현황(3,000만원 이상)

장 비 명	보유형태 (구매, 임대 등)	보유시점	소요금액 (단위 : 천원)

장비 활용목적 심의요구서

(공동활용허용/단독활용/공동활용서비스)

1. 기본 정보

장비등록번호(NTIS)		고정자산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책임자 소속	대학 학과
장비운영자		연락처	
장비 한글명		장비 영문명	
모델명		제작사(제작국가)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장비설명 (특징,구성, 성능,활용분야)			
장비사진 (현재 장비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 정면,측면)			

2. 활용목적 (3가지 중 택1)

※ NTIS 등록장비는 ‘공동활용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활용’ 장비의 경우에는 3-1의 상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공동활용서비스’ 신청 장비는 3-2을 기술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 공동활용허용 - 연구자가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타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용한 시설 및 장비 - 주로 장비보유 책임자가 판단하여 타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락한 상태 -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 단독활용 (3-1. 기술) - 단독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시설 및 장비 - 주로 개별연구자가 직접 관리 - 구입부서만 활용이 가능	☐ 공동활용서비스 (3-2. 기술) - 대외개방을 위해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및 장비 - 연구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	--	---

3. 상세 사유

3-1 단독활용 판단 사유	▶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 후 상세 사유 기술 ①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비(년간 2,000시간 이상 활용장비) ② 시작품, 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장비 ③ 특수목적용 장비로서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어야 하는 장비 ④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지는 장비 ⑤ 국가안보, 기술유출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장비 ⑥ 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비 ⑦ 초고감도 정밀장비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장비 ⑧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타이용자가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 ▶ 상세사유 :
3-2 공동활용 서비스 활용 계획	※ 장비이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배치 계획 등 운영에 따른 계획을 기술

위 장비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장비책임자 : _____ (인)

장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장비상태 판정 심의요구서

(유휴/저활용/불용)

1. 기본 정보

장비등록번호(NTIS)		고정자산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책임자 소속	대학 학과
장비운영자		연락처	
장비 한글명		장비 영문명	
모델명		제작사(제작국가)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활용범위	☐ 공동활용허용 ☐ 단독활용 ☐ 공동활용서비스		
장비설명 (특징,구성, 성능,활용분야)			
장비사진 (현재 장비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 정면,측면)			

2. 장비상태 (장비의 현재 상태/활용가능 상태 중에서 선택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술)

장비상태	☐ 저활용 - 당초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 - 연간 장비가동률이 10% 미만인 장비	☐ 유휴 - 당초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 불용 - 내구연한완료 등 실효성이 상실된 장비 - 파손, A/S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장비 - 보수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여 사용불능으로 판단되는 장비
장비활용가능상태	☐ 정상 가동가능 ☐ 수리 후 가동가능 ☐ 해체 후 부품으로 활용가능		
상태사유	(상세히)		

3. 활용/처분 계획 (아래 항목 중 장비 활용도/공적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선택하고 상세 내용을 기술)

☐ 활용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기관내(학교내) 이전	※ 대학 내 이전 할 기관(연구실,장비책임자)이 있는 경우, <별지서식 3-1> '장비 이전 검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요망
☐ 타기관(학교밖) 이전	※ NTIS에 120일간 공지 후 이전 희망 기관이 나타나면 이전해 줄 것에 동의(이전 비용은 이전요청기관 부담 원칙). 이전 사유 기술
☐ 불용 → 재활용/해체	※ 해체 할 때의 활용 가능 부품 명세 및 부품 활용방안 기술
☐ 불용 → 매각/폐기	※ 장비 폐기 사유 기술 .

위 장비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장비책임자 : _____ (인)

장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3-1호>

장비 이전 검토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연구실			
장비등록번호(NTIS)		고정자산번호	
장비 한글명		장비 영문명	
모델명		제작사(제작국가)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이전 사유			
20. . . 장비책임자 : (소속) 대학 학과 (성명) (인)			
이전 받고자 하는 연구실			
이전 희망 날짜			
이전 후 설치장소			
장비 활용 계획			
20. . . 이전 後 장비책임자 : (소속) 대학 학과 (성명) (인)			